

#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13. 04. 01

개정 2014. 11. 01

개정 2016. 12. 28

## 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자본시장법"이라 한다) 제58조에 의거,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## 제2조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, 동법 시행세칙 및 그 외 관련법규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## 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, 투자일임자산 및 투자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다.

1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2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3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5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6. 성과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며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
7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,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8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,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된다.
9.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기본수수료 :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 계약자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

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이 받는 보수

10.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: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종료일 또는 투자자와 합의한 기간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문 및 운용성과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

#### **제4조(수수료 체계)**

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

1. 기본형 : 기본수수료만 지급
2. 혼합형 :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지급
3. 성과형 : 성과수수료만 지급

#### **제5조(수수료 부과기준)**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투자자문 또는 일임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,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성과수수료 부과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계약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#### **제6조(수수료 부과절차)**

- ① 수수료는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별계약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결정한다.
-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보수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운용기간 중 인상 등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⑤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 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른다.

#### **제7조(설명 의무)**

회사는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#### **제8조(투자광고)**

회사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공시)**

회사는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협회에 대한 통보)**

회사는 자본시장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보고서 기재)**

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시기, 금액 등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기준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기준은 201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기준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기준 시행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